

[별표 1의2] <개정 2016. 12. 15.>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5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3.24>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비 고

- 1. 온천표시 :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 2. 글씨 :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3] <개정 2016. 12. 15>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욕조수(浴槽水)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0.8.11>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 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 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 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 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음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성분 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 황성분(total S-2 성 분함량), 유리탄산 (free CO2) 성분의 경 우는 연 1회 이상 실 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 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별표 5] <개정 2010.8.1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1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온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승인 신청 내용	위 치			
	면 적			
	승인신청 사유 및 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0.8.1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법인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승인 또는 지정 신청내용	위치			
	면적			
지정승인신청 또는 지정신청 사유 및 효과				
온천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온천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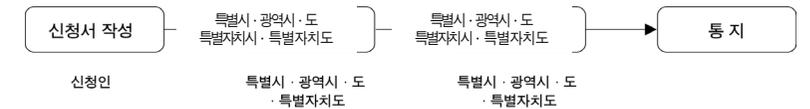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수수료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없 음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0.8.11>

제 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3. 대표자 주소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업의 종류 :

6. 등록조건 :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8.1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 내용	위 치			
	면 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승(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8.11>

###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발내용	위치			
	면적(m <sup>2</sup> )			
개발시설 설치내용	깊이(m)	직경(mm)	채수계획량(m <sup>3</sup> /일)	
	개발기간	사용용도		
사유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개발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 200)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8.11>

###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급수자	성명			
	주소			
목적	이용량		m <sup>3</sup> /일	
이용기간	이용개시일자	년	월	일
이용업소명	소재지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건당 : 10만원
------	---	------------------

####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8.11>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토지굴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온천공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변지	제 호	공
이용업소명	소재지			
이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연월일	년	월 일

**수질(성분) 검사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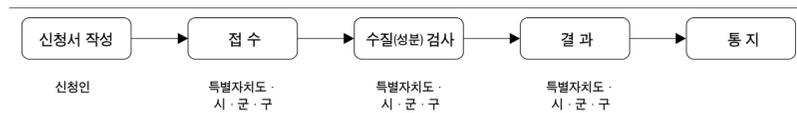
「온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8.11>

**온천발견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발견위치				토지의 용도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발견경위				
발견내용	발견공수	공	온천공의 지름	mm
	온도	℃		
	1일 적정 양수량	톤		
	심도	m		

**발견지역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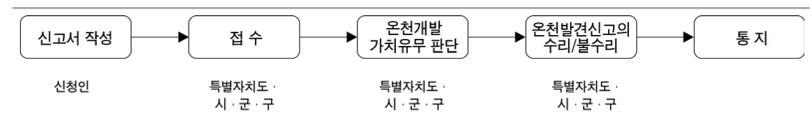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온천공검사보고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8.11>

온천관리대장 ( )온천

(앞 쪽)

온천소재지										
온천 발견상황	온천법 제정 전부터 이용한 지역					온천법 제정 후 신규 지정된 지역				
	최초이용시기(연대)					발견신고일자		수리신고일자		발견자 인적사항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온천전문검사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검사기관명		검사기간		
	1일 적정 양수량			개발적정면적		굴착공수		용출온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수립일자	개발계획면적							비고	
		계	온천이용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기타시설			
	개발주체	총사업비		사업기간		개발후 수익액		시설계획		
	개발방식 (개발면적)	행정조치사항(조치일자)							개발추진 상황	
	국토이용 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조정 계획승인					
온천현황	온천공	온천공수	이용허가공수	미허가공수 (배공수)	심도 (최고~최저)	지표부퇴의수위 (최고~최저)	공내안정수위 (최고~최저)			
	온도 및 수량	온도 (최고~최저)	일일 적정 양수량 (톤/일)	허가가능량 (톤/일)	이용허가량 (톤/일)	천질 (주요성분)	음용가능여부			
	효능									
이용현황	이용객		1일최대 수용능력		이용시설					
	1일최대	1일평균	연간이용객		계	호텔	여관	온천장	기타	
온천자원 보전관리	온천자원 조사실적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실적		수문관측 시설설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주기</li> <li>조사기관</li> <li>조사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주기</li> <li>검사기관</li> <li>검사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위측정관(내경 30mm이상의 내열·내압성관) 또는 수위측정장치</li> <li>유량계</li> <li>온도계</li> </ul>					
온천자원 보전관리 조치상황										

210mm×594mm(보존용지(2중) 7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8.11>

제 호

허가증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위치 :
- 허가종별 :
- 허가내용 :
- 허가기간 :
- 허가조건 :

「온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8.11.>

(앞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 )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색상 : 하늘색)

(뒤 쪽)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유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